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해설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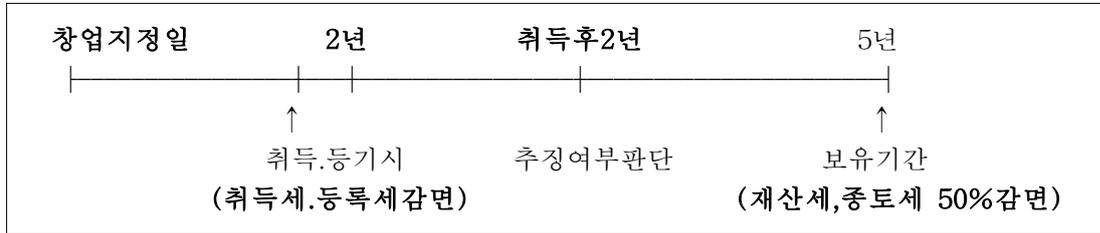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나 그 감면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하며 벤처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창업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벤처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며 그 추징요건이 등록세 중과세등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세 추징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벤처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바 이때 병기 고지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범위]



II.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

1. 개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④). 따라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가 있는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벤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벤처집적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법 상의 세제지원은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2. 대상자

감면대상자는 첫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를 말하는바, 이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일이나 등록일 이전에 지정을 받아야 함으로 지정을 받기 이전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세기준일(매년 6. 1) 기준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이를 개발 또는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승계취득자가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벤처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무엇이 개발·조성이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벤처집적시설 지정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3. 벤처집적시설의 범위

1) 지정요건

① 건물면적기준

-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지정범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할 것
 - 가. 벤처기업
 -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외의 면적을 다음 각목의 시설이 차지할 것. 다만, 다목의 시설은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한다.
 - 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나.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다. 공용휴게실 및 회의실

여기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2) 감면대상의 범위

① 건축물의 범위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되 1동의 건축물이라도 일부만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공용면적 부분이 함께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중 주차장·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전체공용면적 ×벤처기업,지원시설,관련시설의 전용면적/건물 전용면적

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공통공용면적×벤처기업,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건물 전용면적 + 층별 공용면적(지정받은 층에 한함)
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

② 부속토지의 범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도 감면대상이나 1동의 건축물 일부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면적 비율 범위내에서만 감면대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의 안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속토지면적 = 벤처기업,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건물 전용면적

4. 감면대상 판단

1) 요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이를 개발·조성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추후 분양, 임대, 자가사용에 불문하나, 그 취득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감면 후추징』 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면대상 :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후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 개수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감면세목 및 범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분양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건물면적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분양받은 자가 창업중소기업이거나 벤처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50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5. 추징요건

1) 취득후 3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첫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

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미분양되거나 임대부진한 사유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을 취득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당초 지정면적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더라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내용의 변경일이나 당초 지정된 면적보다 축소된 날을 추징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둘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여야 하고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수가 없으므로 건축공사중에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당해 부속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였으나 일부 조성후 매각하였을 경우 추징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각한 부동산을 금융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95누18314, 1996. 03. 12) 따라서 만약 주거래은행의 기업구조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의거 기 조성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금융부채상환과 매각에 정당한 사유 인정

1.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IMF 영향 등의 사유에 의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work out)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건축중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된 기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행자부 세정 13407 -846, 1999. 7. 10)

2.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업구조개선기업(work-out)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업개선작업약정서상 자구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그 사전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라면 경기도세감면조례 제8조 단서규정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히 감면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 13407-882, 2000. 7. 8)

3.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취득일로 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거래은행과 기업구조개선작업(work out)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건축중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다면 그 중단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행자부 세정13407-149, 2001. 2. 9)

4.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던중 기업경영이 악화되어 극심한 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대판92누11664, 93. 2. 23, 구내무부 내심97-326, 97. 7. 23 참조)(행자부 세정13407- 527, 2001. 5. 16)

넷째,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정하는 것이나 일부라도 개발조성을 한 경우에는 기 감면한 면적 전체부분에 대하여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전체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부분을 추정할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276조제4항의 규정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라도 개발하거나 조성하였다면 추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4조 [규칙제55호 1999.5.24 개정이전의 것] 제5조의 규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규정한

규정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과 관련한 규정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논리로서 구 지방세법제276조제4항의 규정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나,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벤처집적시설을 일부라도 개발·조성을 하였다면 추정할 수가 없다는 견해도 제기될 수가 있다.

[판례] 상환범위와 감면범위 판단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99두11004, 2000. 7. 28참조)

다섯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일부 개발·조성한 경우에는 전체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조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정할 수가 있는가?

설령 넷째 논리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정하는 것이므로 일부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경우에는 기 감면한 부분 전체를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체 감면액에서 조성된 비율 부분은 감면되고 나머지 조성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5년내 지정이 취소 된 경우(2001. 1. 1이후부터 적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적용하는 부분은 벤처집적시설이 그 지정일로부터 5년내 벤처집적시설지정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규정은 2001. 1. 1이후에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2000. 12. 31까지)에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0. 12. 31까지 취득한 벤처집적시설이 지정 취소되더라도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규칙제5조 제3항)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할 것
 - 가. 벤처기업
 -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외의 면적을 다음 각목의 시설이 차지할 것. 다만, 다목의 시설은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나.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다. 공용휴게실 및 회의실

[사례]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가" 방식(감면이후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이 타

당하다고 사료됨(행자부 세정13430-102, 2001. 1. 27)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구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1998. 12. 31 개정이전의 것)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3407- 315, 2001. 3. 22)

[사례]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

구지방세법(법률제6060호 1999. 12. 28 개정이전의 것)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직접 공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

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442, 2001. 4. 21)

- 이 경우 감면대상은 직접조성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이며 조문상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기 때문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기 할 수가 있음

[사례] 벤처집적시설의 지방세 면제범위

당해 건축물의 일부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증여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00분의 50 경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시기 적용은 구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제4항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임. (행자부 세정13407-525, 2001. 5. 16)

[사례]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대한 추정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단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는 규정은 동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312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이후 취득 부동산부터 적용됨(행자부 세정13407- 609, 2001. 6. 4)

[사례] 벤처집적시설과 개수관련 감면판단
벤처집적시설에 대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건축의 범위에는 대수선이 없더라도 취득의 범위에는 일체의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벤처집적시설을 취득한 이후에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미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후에 대수선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함.(행자부 세정 13407-11, 2001. 7. 2)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범위

지방세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312호) 제10조에서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구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행자부 세정13407-196, 2001. 8. 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효과가 있으나 개정지방세법에서는 취소된 경우 추정규정이므로 종전규정은 없으므로 추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 범위

구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2000.12.29 개정되기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

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은 후 일부는 벤처기업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벤처기업인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자가 직접사용하는 경우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 610, 2001. 11. 30)

[사례]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 189, 2000. 2. 15.)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벤

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기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벤처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벤처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행자부 세정13407- 869,2000. 7. 7)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기존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벤처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동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177, 2000. 10.6)

[사례]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귀시 의견과 같이 "정설"(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인정되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직접 공여되는 부분에 대하여 50% 감면대상임)이 타당함.(행자부 세정 13430-806, 2000. 6.23)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기존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벤처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동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177, 2000. 10.6)

Ⅲ. 벤처창업중소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

1. 창업의 의의

첫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창업에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창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 ② 기업이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③ 창업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에 해당될 것
- ④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둘째, 창업 범위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국내에 공장의 신설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지방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경우 동종사업의 판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

- 을 계속하는 경우
- ②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기존공장을 매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④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2002년까지는 기존 공장을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에서 제외
- ⑤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⑥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호간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폐업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전의 장소에는 그 사업 활동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업의 조직변경 등 형식상 창업 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직변경 전후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창업으로 인정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사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①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은 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기업이 원시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에 해당하



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존에 설립된 기업이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나 기존에 설립된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07-985, 2000. 8. 9)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을 한후에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1052, 2000. 8. 30)

3. 1998년 12월 28일 골판지상자 제조회사를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하던중 2000년 2월 1일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였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1310, 2000. 11. 16)

4.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창업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 다른 제조업종의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고 하겠고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 (행자부 세정 13407- 1350, 2000. 11. 24)

5. 1991. 1.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동종의 사업으로 1999.1.1.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기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창업일인 1991.1.1.부터 2년후인 2000.8.1.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13407-1476, 2000. 12. 28)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없음(행자부 세정 13407-363, 2001. 4. 3)

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음(행자부 세정 13407-279, 2001. 5. 2)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을 뜻하는 바 개인사업자가 A장소에서 사업(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B장소에서 이종업종(섬유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중소기업청 창업 55477-447, 2000. 9. 7 참조)(행자부 세정 13407-567, 2001. 5. 26)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서 동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동령 [별표 1]에서 정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중소기업을 뜻하는 바 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공장건물·토지)에 취득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취

득 부동산에 취득전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행자부 세정 13407-174, 2001. 8. 7)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법인은 당해 법인 설립일('97. 10. 23)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2000. 6. 26) 받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없음(행자부 세정 13407-595, 2001. 6. 4)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13407-231, 2001. 8. 17)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

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도난 회사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세정 13407-409, 2002. 5. 2)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사실상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기존의 제조공장 등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세정 13407-818, 2002. 8. 31)

2. 창업일의 기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의 개시일』 중 빠른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례] 창업일의 범위 판단

1.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창업일이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내무부 도세 22670-812, 1990. 3. 1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 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1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행자부 세정13407-605, 2001. 6. 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법인의 경우)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에 해당되면서 동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별표 1] 외의 지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중소기업을 뜻함(행자부 세정 13407-624, 2001. 6. 5)

3. 창업중소기업 등의 업종 및 범위

첫째, 창업중소기업 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업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열거한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에 한함]
-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용 관련업
- 물류산업(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및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중 파렛트 임대업에 한함)
- ※ 2003. 1. 1부터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추가
- ※ 따라서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실·욕탕 및 유사서비스업등 기타서비스업은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둘째,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

정에 적합할 것이며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의 범위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추후 업종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113조 제2항과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행자부 세정 13407-1128, 2000. 9. 2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화물운송업을 창업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됨(세정 13407-1069, 2002. 11. 8)

4. 창업중소기업 등의 요건

1) 창업중소기업

2003.12.31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

행령 제9조 별표 1 참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2002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2002년까지는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한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지역에서 설립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3년부터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전까지의 예비 벤처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종류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을 말함)을 한 경우를 의미함(행자부 세정 13407-1086, 2000. 9.9)

2.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에서 "창

업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1]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여기서 수도권은 동법시행령 【별표1】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인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말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13407-110, 2001. 1. 31)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바, 귀문과 같이 2000. 8. 28 서울특별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2001. 6. 11 경기도 이천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282, 2001. 9. 3)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

□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 전액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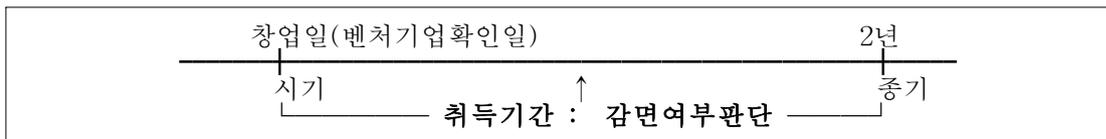
- 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②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 ③ 사업용재산
 - ④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 100분의 50 감면
- 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② 창업일로부터 5년간(5과세연도)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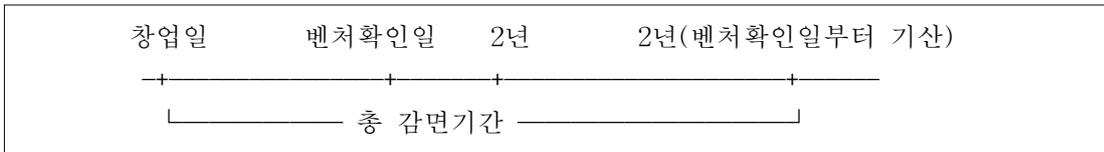
1) 감면기간

①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감면하는 기간은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이나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창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취득일이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며, 취득시기의 판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만 감면되고, 증





자등기의 경우나 기간 경과후의 등기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이후에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는 벤처확인일부터 2년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하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행자부 세정 13407-221, 2000. 2. 26)

2. '을설'(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 13407-1002, 2000.

8. 16)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자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13407-1074, 2000. 9. 8)

4. 200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하여 2000.7.18.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을 받은날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본점소재지 이전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행자부 세정 13407-1283, 2000. 11. 7)

5. 1997.5.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창업벤처중목을 설립시부터 영위하였고 1998.9.23.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을 받은날부터 2년내인 2000.6.27.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13407-1269, 2000. 11.4)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공여되는 사업용재산이 아닌

임대를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행자부 세정 13407-1229, 2000. 10. 24)

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2000.11.6) 이전에 법원경락에 의해 공장용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등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행자부 세정 13407-266, 2001. 3. 13)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1999. 8. 31 법률제5996호)제10조에서 "제119조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사가 1999년 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당해 사업용 재산을 2000년 8월에 취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행자부 세정 13407-383, 2001. 4. 9)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그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674, 2001. 6. 19)

10.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세정13407-189, 2002. 2. 26)

11. 창업중소기업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라면 당해 사업용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세정 13407-333, 2002. 4. 6)

②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하고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감면기간의 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과세년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잔여기간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한 경우 통합법인 및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가 개인기업 설립 :	1999. 12. 23
○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2001. 7. 1
○ 벤처기업 확인 :	2001. 9. 3
○ 공장용부동산 취득일 :	2001. 10. 10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전환의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간은 유예기간으로 국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도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창업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자로서 지위가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자가 2년 이내에 조세법 등에 의해 법인전환된 경우법인전환된 기업에 대

해 바로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면서 법인전환을 유도함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기존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모순이 있으며 국세청, 중소기업청에도 법인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간은 창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여 국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국세, 지방세가 조세법 동일조항에 의거 감면되고 있는 사항을 서로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된 기업에 대하여도 당초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간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의 경우 개인기업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되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는 형태가 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사업의 승계인 이상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엄격해석해야 하므로 감면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소득세 등 국세는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명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③ 기타세목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병기고지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

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의 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타 감면제의 대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감면대상 :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며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감면한 세액도 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의 범위는

첫째, 사업용재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저당권 및 전세권등도 사업용으로 공여되는 경우 모두 사업용재산에 포함하며 부동산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사무소 등과 이와 같은 구내에 있는 부속시설(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한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의 공장구외에 있는 부동산 등은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예 : 공장 구외의 기숙사 등). 그리고 차량 등은 창업중소기업 명의로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당해사업에 공여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 사업용재산의 범위

1. 부동산·차량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30-391 1997. 8.2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당해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 한함)한 경우라면 동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966, 2000. 8. 1)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토지·건물을 일괄 취득하던지 개별적으로 취득하던지에 관계없이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완성 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1029, 2000. 8. 21)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규정의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레미콘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1051, 2000. 8. 30)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업종에 직접 공여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원용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기 위한 아파트 전세권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행자부 세정13430-356, 2001. 9. 24)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징

1) 2002. 12. 31까지 취득·등기된 재산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

정하고 있어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임대한 경우 및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동산 취득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케한 실적이 없이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취득후 2년 이내에 사용을 개시한 경우라면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개시"는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을 의미하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은 직접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2003. 1. 1 이후 취득·등기된 재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지방세 감면 추징규정이 개정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추징대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재

산을 취득하여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임대한 경우 및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다.

2002. 12. 31 까지는 일시사용후 매각하는 경우 등은 추정되지 않았으나 2003.1.1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재산을 취득하여 일시사용후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처분(매각, 임대 등)하는 경우에는 추정대상에 포함되며 추정제외 대상으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재산을 취득하여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을 개시하고 당해 재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경과시까지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만 추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계속하여 사용하면 추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의 판단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천재지변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하고, 법인내부의 사정으로는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

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대지와 건물의 전임차인들에 대하여 즉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의 소요기간으로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이다.

[사례] 지방세 감면 추정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 법인에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됨(행자부 세정 13407-364, 2000. 3. 9)

2.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및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여 공장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IMF 영향등으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주거채권은행에서 귀사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업회생지원업무규정에

의거 그 가동중인 공장용 부동산을 자산, 부채, 종업원 등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타사에 양도시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단서규정과 지방세법 제276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허 경감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정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875, 2000. 7. 8)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정됨(행자부 세정 13407-196, 2001. 2. 20)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증자에 대하여는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07-1001, 2000. 8. 16)

4.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개정 이

전의것)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날을 말함)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이 추정되는 것이다. 귀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6개월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기업경영악화로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전액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라면 기감면받은 세액은 추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심사2001-126 및 대판92누11664 참조) (행자부 세정 13407- 134, 2001. 7. 25)

5.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정됨(행자부 세정 13407-334, 2001. 9. 14)

6. 창업후 당해 창업중소기업 주주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창업중소기업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정되지 아니함(세정 13407-1194, 2002. 12. 17)

7. 지방세 감면신청과 신고납부

1) 감면신청

창업중소기업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조제9항에 의거 감면사유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부감면신청절차나 서식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세는 등기·등록 신청시」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되 시장·군수는 감면여부에 대한 통지를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면대상임에도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한 경우 환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중복감면의 배제

창업중소기업이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창업일로 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은 선택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적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감면법령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시> : 농어촌특별세 과세내용

-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거 감면 :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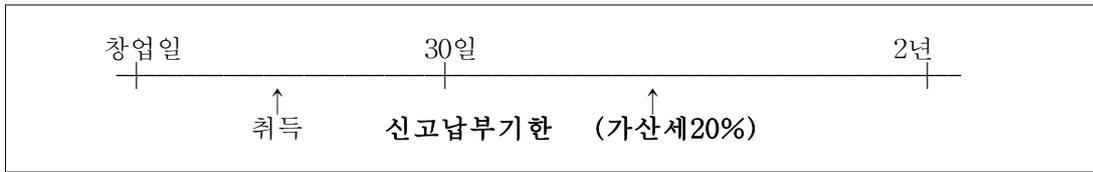
[예시] OO지방산업단지내에서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용부동산을 2억원에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부터 취득·등기시의 취득세의 감면범위

<농어촌특별세액 산출>

- ①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감면신청시
 - 2억원 × 2% = 400만원 [취득세 : 전액면제(400만원)]
 - 400만원 × 20% = 80만원(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
 - 총납부세액 : 80만원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의거 감면신청시
 - 2억원 × 2% = 400만원 [취득세 : 전액면제(400만원)]
 - 400만원 × 20% = 80만원(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총납부세액 : 0만원

3) 신고납부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고납부 불이행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되는 것이다.

<추징세액 산출>

- 2억원 × 2% = 400만원(취득세액)
- 400만원 × 20% = 80만원(가산세)
- 총부과세액 : 480만원

[예시] 부동산을 2억원에 창업중소기업자가 취득하였으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된 경우 취득세의 추징세액(미신고 납부시)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당해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20%부과되는 것이다.

